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3. 30 선고 2022가단111877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호

피고B

변론 종결 2023. 1. 19.

판결 선고 2023. 3.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부산 기장군 D에 소각장을 신축하기로 하였다(이하 소각장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2) 원고와 C 및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C이 원고에게 위 공사를 도급하고, 원고는 도급받은 공사를 E에 하도급하기로 하였다(C ⇨ 원고 ⇨ E). 피고는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 3) 원고는 C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 C에 3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다(이하 위 3억 원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원고와 E 및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및 위 차용금 관련하여 2021. 7.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약정서에 기재된 '갑'은 원고, '을'은 E, '병'은 피고를 말하고, 사업주체는 'C'을 말한다). 피고는 위 약정서 하단에 E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하였다.

제1조 [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甲"이 사업주체에게 총 3억원을 대여하기로 하며 "丙"은 본 사업의 코디네이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가칭) D 소각장 신축공사 중 건축공사(약 200억)를 "甲"이 도급계약 체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또한 "乙"과 "丙"은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첨부된 "甲"과 사업주체간의 차용증 조건대로 대여금 지급과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지기로하며 "甲"의 수주영업을 위한 지속적인 업무지원과 상호협력을 하기로 한다. 아울러, 모든 사항은 철저한 비밀유지를 통하여 상호간의 신뢰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제5조 [대여금 지급 및 상환 등]

1. 대여금의 지급 및 원리금 전액의 상환조건은 첨부된 차용증의 내용과 같이 정한다.
단, "乙"이 원리금 상환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丙"이 1개월 이내에 책임지고 상환하기로 하며, 만약 상환 불가시에는 "甲"의 채권행사와 관련하여 "乙"과 "丙"은 어떠한 민, 형사상 이익을 제기하기 않기로 한다.
- 4) 원고는 2021. 7. 20. C에 3억 원을 대여하였고, C은 위 돈을 2021. 10. 19.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월 2%의 비율로 지급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위 약정서 제1조에 기재된 차용증임, 차용증의 작성일자는 2021. 7. 20.이나 위 차용증이 위 약정서에 첨부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실제 작성일은 2021. 7. 19.이고, 돈은 그 다음 날 지급된 것으로 보임). E는 위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5)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였고, 차용금도 변제받지 못하였다.

6) 원고는 E에 대한 유체동산 집행을 통하여 2022. 6. 30. 765,074원을 배당받고, 채권배당절차에서 2022. 12. 20. 68,870,253원을 배당받아 2022. 9. 16.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총당하였다(이자제한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총당함).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약정서 제1조는 '원고가 C에 3억 원을 대여하고, E와 피고는 C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은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한 E가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피고가 1개월 이내에 책임지고 상환하며, 원고의 채권행사와 관련하여 E와 피고는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 C에 3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공사도 도급받지 못하고 위 돈도 변제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원금 3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22.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C이 정해진 기일까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와 C 및 E는 2021. 12. 23. 위 두 회사가 원고에게 위 돈을 2022. 1. 20.까지 변제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며 개인인 피고를 이 사건 차용금의 연대보증책임에서 제외해주었고, 따라서 위 공정증서에는 피고 부분이 없다. 원고는 피고를 이 사건 차용금의 연대보증채무에서 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27530 판결).

2)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C 및 E와 사이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위 공정증서에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를 이 사건 차용금의 연대보증채무에서 면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노행남